

의안번호	제556호
의결 연월일	2024년 4월 일 (제 회)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자	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12일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박용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6
----------	-----

발의연월일 : 2024년 4월 12일

발의자 : 박용규·김현문·이정범
박병천·박재주·유상용
이양섭 의원

1. 제안 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개정, 2022. 1. 13. 시행)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1. 10. 19. 제정, 2022. 1. 13.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이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청구를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해야 했던 조항이 삭제 되고,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존치 이유가 사라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폐지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는 폐지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비용추계: 생략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국 행정과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 폐지조례안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 수
기준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9조(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의 청구권자·청구대상·청구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약칭: 주민조례발안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